

인천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합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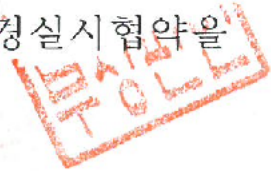
2017. 8. 14.

국 토 교 통 부
인 천 대 교 주 식 회 사



인천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합의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인천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는 인천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6월 13일 인천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최초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2005년 5월 3일 최초 실시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인천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이하 “1차 변경실시협약”이라 한다)을, 1차 변경실시협약 제16조 제8항에서 정한 주경간 팔백미터로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2005년 5월 30일 1차 변경실시협약을 변경하는 인천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 주경간 변경에 대한 합의서(이하, “2차 변경실시협약”이라 하며, 2차 변경실시협약에 의하여 변경된 1차 변경실시협약을 “본 사업 실시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자금재조달(이하 지분양수도, 자본구조변경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신규 금융약정의 체결을 포함하여, “본건 자금재조달”이라 한다)의 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유이익을 본 사업의 통행료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본 사업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하고, 인천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합의서(이하 “이 변경 합의서”라고 한다)를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변경합의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합의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사업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2조. 통행료 등의 변경

(1) 본건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을 반영하여, 본 사업 실시협약상 통행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록 14 “차종별 기준 통행료”는 소형에 대해 4,338원^(*)(2004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VAT 포함)에서 3,780원(2004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VAT 포함)으로 변경하는 등 별첨7과 같이 변경한다.

(*) 2차 변경실시협약에 따르면 소형 통행료는 4,600원(2004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VAT 포함)이나, 2009년 10월 16일 최초 통행료 공고시 4,338원(2004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VAT 포함)으로 조정됨

(2) 제1항의 변경된 “차종별 기준 통행료”에 따라 산정된 통행료는 2017년 8월 15일 00시부터 적용한다.

(3) 제1항의 “차종별 기준 통행료”의 변경에 따라 본 사업 실시협약의 부록12 “추정통행료수입”을 별첨6과 같이 변경한다.

제3조. 운영비의 변경

(1) 본 사업 실시협약 제42조 제1항의 운영비용의 금액을 금 4,541억원^(*)(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에서 금 4,549억원(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변경한다.

(*) 2차 변경실시협약에 따르면 운영비는 4,364억원(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이나, 2009년 10월 16일 최초 통행료 공고시 4,541억원(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조정됨

(2) 제1항의 운영비용의 변경에 따라 본 사업 실시협약의 부록11 “운영비용”을 별첨5와 같이 변경한다.

제4조. 사업수익률 및 출자자의 변경

(1) 본 사업 실시협약 제51조의 사업수익률을 7.95%로 변경한다.

(2) 본건 자금재조달에 따라 본 사업 실시협약 부록1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구성”을 별첨1과 같이 변경한다.

제5조. 현금흐름표 등의 변경

(1) 이 변경합의서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사업 실시협약 부록15 “통행료 및 건설분담금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부록18 “재무모델”을 이 변경합의서의 별첨8 및 별첨9와 같이 변경한다.

(2) 본건 자금재조달이 완료된 후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 변경합의서 별첨9로 첨부된 재무모델을 기본 재무모델로 한다.

제6조. 기타 변경사항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2009년 10월 16일 본 사업 최초통행료 공고시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총사업비, 건설분담금 지급일정, 운영개시일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후 별도로 실시협약 변경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 변경합의서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한다.

(1) 본 사업 실시협약 제11조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금액을 금 10,923억원(2000년 1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변경한다.

(2) 본 사업 실시협약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분담금의 금액을 금 5,761억원(2000년 1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변경한다.

(3)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이 변경합의서 제6조에 따라 본 사업 실시협약 부록2 “약정투자금 투입 일정”, 부록3 “총사업비”, 부록4 “건설분담금 지급일정”을 이 변경합의서의 별첨2, 별첨3 및 별첨4와 같이 변경한다.

제7조. 변경합의서의 수정

이 변경합의서는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합의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변경합의서의 효력

(1) 이 변경합의서의 효력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모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 또는 종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2) 이 변경합의서는 본 사업 실시협약의 일부로서 해석되며, 본 사업 실시협약의 내용과 이 변경합의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이 변

경합의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이 변경합의서는 본 사업 실시협약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글
본으로만 체결하며, 정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본 합의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별첨

1. 실시협약 부록 1 :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구성
2. 실시협약 부록 2 :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3. 실시협약 부록 3 : 총사업비
4. 실시협약 부록 4 : 건설분담금 지급일정
5. 실시협약 부록 11 : 운영비용
6. 실시협약 부록 12 : 추정통행료 수입
7. 실시협약 부록 14 : 차종별 기준 통행료
8. 실시협약 부록 15 : 통행료 및 건설분담금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9. 실시협약 부록 18 : 재무모델

2017년 8월 14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 김 현



인천대교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수

